

유상증자 결정

2024년 4월 26일



에이펙스자산운용(주)

유상증자 결정

1. 신주의 종류와 수	보통주식 (주)	80,000
	기타주식 (주)	-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		5,000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(주)	보통주식 (주)	400,000
	기타주식 (주)	-
4. 자금조달의 목적	시설자금 (원)	-
	운영자금 (원)	400,000,000
	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	-
	기타자금 (원)	-
5. 증자방식		제3자배정증자

※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

정관의 근거	정관 제10조
주식의 내용	보통주
기타	이사회 결의사항

【제3자배정증자의 경우】

6. 신주 발행가액	보통주식 (원)	5,000
	기타주식 (원)	-
7.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(%)		-
8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		정관 제10조
9. 납입일		2024년 04월 26일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		2024년 04월 26일
11. 신주권교부예정일		주권미발행
12. 신주의 상장 예정일		해당사항없음
13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24년 03월 19일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해당사항없음
	불참(명)	해당사항없음
- 감사(감사위원)참석 여부		불참
14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		미해당
15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		미해당
16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	미해당
1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

【제3자배정 근거, 목적 등】

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	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
정관 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 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경우 그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 ②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 그 권리행사기간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인가, 확인 또는 승인을 얻는데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1.~2. (생략).	운영자금 확보하여 당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의 실행 및 영업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하고자함

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

제3자배정 대상자	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선정경위	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	배정 주식수(주)	비고
고영우	-	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,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	이사회결의일 전 6개월 거래내역 없음. 주주참여 후 거래계획 없음.	80,000주	보호예수기간 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.

주2) “신주의 종류와 수”, “증자 전 발행주식총수”, “신주 발행가액”에는 보통주식과 기타주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
가. 보통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

나. 기타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

- 주3) “증자전 발행주식총수”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.
- 주4) “증자방식”에는 주주배정증자, 주주우선공모증자,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.
- 주5) “기타주식에 관한 사항”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에 관한 정관의 근거,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. 해당 주식의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-4-3조(다양한 종류의 주식)의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.
- 주6) “신주발행가액”은 공시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발행가를, 예정가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발행가 및 확정예정일을 기재한다.
- 주7) “발행가 산정방법”은 기준주가 결정방식 및 적용 할인율 또는 할증율 등을 기재한다. 이 경우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보고일 현재 이사회 등에서 정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말한다.
- 주8) “신주발행가액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“발행가 산정방법”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- 주9) “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”은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하고,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.
- 주10) “1주당 신주배정주식수”는 소유주식 1주당 유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11) 【제3자배정 근거, 목적 등】의 “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”에는 3자배정 증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관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“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”에는 3자배정 증자의 사유,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12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“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”에는 최대주주,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를 비교란에 별도로 기재한다.
(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, 최대주주인 (주)ABC의 임원
- 주13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“선정경위”에는 3자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, “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”에는 이사회결의일 전후 6월 동안의 회

사와 배정대상 제3자와의 거래내역 및 향후 계획(제품매출·매입, 자산매각·매수, 담보제공 등 제반거래 포함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“비고”에는 보호예수 기간 등을 기재한다.

주14) 【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】에는 제3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신주인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에 기재한다. 이 때 “최대주주”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하며, 이 경우 “금융회사”는 “법인 또는 단체”로 본다.

주15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, 신주권교부예정일, 단주처리방법,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,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16)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주17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해당 보고사항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)”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.